

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권한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07년 9월 5일
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
재무건설위원회

1. 審査經過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7년 8월 30일 종로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07년 9월 3일 원안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17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
제1차 재무건설위원회(2007. 9. 5) 상정 · 의결

2. 提案說明의 要旨 (제안설명자 : 기획재정국장 조 성 린)

가. 개정이유

- 「약사법」, 「의료법」, 「지방자치법」, 「전염병예방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·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사무의 신설·개정 및 근거 법령을 정비하여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「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권한 위임조례」를 「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 위임조례」로 제명 개정
- 구의회사무국장에게 별정직·기능직·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위임
- 보건소장의 소독업에 관한 위임사무 신설
- 「약사법」, 「의료법」 등의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의 근거법령 개정

3.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

(보고자 : 전문위원 김 충 식) — 별첨 검토보고서 참조

4. 質 疑 및 答 辯 要 旨 (생 략)

5. 討 論 要 旨 (없 음)

6. 修 正 案 의 要 旨 (없 음)

7. 審 査 結 果 : 원안가결

(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함)